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찬성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예지
김상훈 · 김종양 · 서천호
박형수 · 최보운 · 박충권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,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7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를 “5년마다 수립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)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공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<u>수립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공표) ① ----- ----- -----<u>5년마다</u> <u>수립하여야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